

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

의안 번호	2019~130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근거법령 : 지방출자·출연법 제20조,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
- 대 상 : 거창문화재단(이사장 구인모)
- 사 업 비 : 691,000천원(출연 예정금액)
 -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 : 백만원)

사업기간	2019년 예산액	2020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군 특	도 비	군 비	기 타
2020년	906	691	691			691	

○ 사업내용

-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(직원 4명, 기간제 2명) 지원
-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(공공요금, 시설유지비 등) 지원

나. 부서의견

-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후 운영 4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한마당대축제 기획·운영 업무를 비롯하여
-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3. 관련법규 및 조례

- 지방출자·출연법 제4조 제1항, 제20조 제1항
-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, 제2항

4. 참고사항

- 출연금 개요 :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
-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
- 전년도와 달라진 점 :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
-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
- 도내 문화재단 예산현황 비교

관 계 법 령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지방출자출연법)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(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) (시행일 : 2016.11.23.)

제4조(운영재원 등)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, 보조금, 재단사업 수익금,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,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-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【 출연기관 현황 】

거창문화재단

설립근거	법률 : 「민법 제32조」, 「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」 조례 : 「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」				전화번호 : 055-940-8460		
					홈페이지 : www.gccf.or.kr		
주요연혁	법인설립허가 : 2017. 1. 12.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		
인원현황 (‘19. 10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10명		6명		4명		
임원 (‘19. 9.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구○○	現 거창군수		재직기간(2018.7.2~현재)		
	비상임이사		이○○	現 거창군 문화관광과장		재직기간(2019.1.1~현재)	
			이○○	前 아림예술제위원회 위원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이○○	거창문화원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민○○	거창예총 회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박○○	거창전수관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신○○	前거창농협조합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곽○○	거창문화원 임원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백○○	아림예술제위원회 감사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김○○	거창문화원 이사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이○○	경남일보 차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신○○	사색의향기 문화원 거창지부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	김○○	거창예총 수석부회장		2년(2019.1.18~2021.1.17.)	
		정○○	거창미협 윤리이사		2년(2019.1.18~2021.1.17.)		
감사		강○○	現 거창군 재무과장		재직기간(2019.7.19~현재)		
		이○○	세무사		2년(2019.1.18~2021.1.17.)		
주요기능	문화공연 및 전시 기획·운영, 문화아카데미 운영, 거창한마당대축제 기획·운영 등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	236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	50 (2017년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)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7	2018	2019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8.12.31기준	자산	425 (자산 총액)
	예산액 ²⁾	3,458	2,265	2,681		부채	188 (부채 총액)
	지자체 지원액 ³⁾	3,095	1,907	2,557		자본 ¹⁾	237 (자본금 총액)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‘18. 12. 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2,015			2,080		-61	

참 고 사 항

① 출연금 개요 :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[계속사업]

- 사업목적 :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
- 사업기간 : 2020. 1. ~ 2020. 12.
- 사업장소 : 거창문화재단 일원(거창문화센터)
- 사 업 비 : 691,000천원 / 출연금
- 증감사유 : 감)215,300천원 / 전년 당초예산 대비
 - 직원 4명 미채용*에 따른 인건비 감축 편성 (감158,329천원)
 - ※ 미채용 인원(4명) : 사무처장 1명, 문화사업2단 3명(단장 1, 단원 2)
 - 여비, 업무추진비, 관서업무비 과다 편성분 삭감 (56,971천원)
- 사업내용 :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, 경상경비(운영비, 관리비 등)

세부사업	2020년	2019년	사업내용
문화재단 운영 지원	691,000	906,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건비 : 280,21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 원 : 220,689천원 / 4명(문화사업1단장 1, 단원 3) * 단원 : 무대예술전문인(조명, 음향) 2명, 문화사업업무 1명 - 기간제 : 59,521천원 / 2명(환경관리 1, 사무보조 1) ○ 경상경비 : 410,790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복리후생비 : 27,400천원 / 4대보험, 직급보조비 등 - 일반운영비 : 137,490천원 / 소모품, 임차료, 당직비 등 - 공공요금 : 139,651천원 / 우편, 상하수도, 전기료 등 - 시설유지비 : 35,000천원 / 정화조, 공조기 청소 등 - 회의운영비 : 13,930천원 / 참석수당, 심사수당 등 - 여비교통비 : 37,319천원 / 국내여비 및 교통비 등 - 업무추진비 : 16,000천원 / 시책업무 추진 - 관서업무비 : 4,000천원 / 재단 운영 업무추진

②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	내용
지원금액	544,130	544,130	906,300	691,000	재단 사무국
전년대비증감	-	-	증) 362,170	감) 215,300	인건비,
예산과목	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(307-03)			출연금(306-01)	시설유지비 등

③ 전년도와 달라진 점 :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

○ 전환 필요성

- 거창문화재단은 2017년 1월 설립되어 3년간 운영되어 왔으며, 현재 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(뮤지컬, 가요 콘서트 등)과 전시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매년 색다른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거창한마당대축제를 군민화합의 장으로 이끄는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
- 이에 재단 설립 초기에 군의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하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인력 및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- 같은 이유로 도내 타 문화재단 모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중임

○ 전환 시 문제점

- 재단의 예산 집행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예산 집행 투명성 저하 우려

○ 해결방안

-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예산집행 투명성 보장
- 출연금에 대하여는 정산 의무 없으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사후정산 지속 운영, 관리 감독 철저

④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

구 분	출연금	보조금
정 의	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	지자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, 부담금 등
일반법적 근거	없음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개별법적 근거	지방출자출연법 제4조	필수요소 아님
용도 지정	사용 용도 지정 없음 (단, 목적 출연금만 용도 지정)	사용용도 지정 필수
예산과목	306-01(출연금)	307-03(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)
집행 잔액 및 이자 등 수입	재단 자체 수입으로 함	군으로 반환함

5 도내 문화재단 예산 비교 (2019년 당초예산 기준)

○ 보조금은 없으며, 출연금 및 경상적 위탁사업비 혼용 지원

(단위 : 천원)

기관명	지원성격	지원금액	내용(예산서 부기명)	부 서
창원문화재단	출연금	13,680,000	- 재단 운영 13,480,000 - 예술작품 구입 200,000	문화예술과
김해문화재단	출연금	18,247,103	- 출연금 18,247,103	문화예술과
통영문화재단	출연금	2,851,298	- 인건비 1,638,106 - 운영비 372,624 - 통영국제음악당 시설비 840,568	문화예술과
	경상적위탁	1,506,550	- 통영국제음악제 1,210,000 -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40,000 - 윤이상동요제 50,000 - 꿈의오케스트라 운영지원 106,550	
사천문화재단	출연금	2,409,647	- 재단 출연금 2,409,647	문화관광과
밀양문화재단	출연금	5,441,093	- 재단 출연금 5,441,093	문화관광과
거창문화재단	보조금	906,300	- 재단 운영지원(인건비, 경상경비) 906,300	문화관광과
	경상적위탁	1,651,300	- 문화공연 및 전시 865,000 - 거창한마당대축제 786,300	

- 우리 군은 통영시와 같이 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고,
 - 그 외 문화공연 및 전시, 거창한마당대축제 등의 문화사업은 기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임
 - 문화공연 및 전시사업은 수익성 사업(대관료, 입장료)이므로 당해 수익금을 군으로 반환받기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임 (출연금으로 전환 시 군으로 수익금 반환 불가)